#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개정이유

○「전자정부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8207호, 2021. 12. 9. 시행)되어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26조의3 신설)
-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(안 제28조제4항제11호 신설)

# 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

### 5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3(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)
① 정보주체가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각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28조제4항 중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6조의3(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) ① 정보주체가 「전자 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각호의 자에게지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 이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
제28조(증명서 등의 수수료) ① ~ ④ (생 략) 1. ~ 10. (생 략)	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      제28조(증명서 등의 수수료)      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1. ~ 10. (현행과 같음)
< <u>신</u> 설>	11.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<u>11.</u> ~ <u>13.</u> (생 략)	<u>12.</u> ~ <u>14.</u> (현행 제11호부터 제13

# 호와 같음)

# 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327